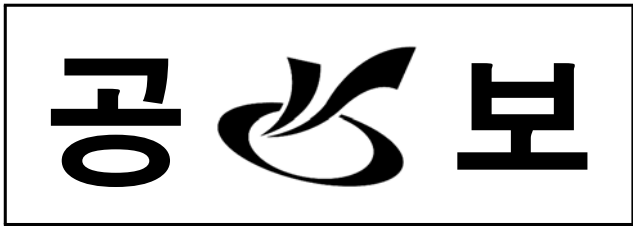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44호
2008년 7월 1일 화요일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0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2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예규 제75호 인천광역시서구감사사무처리요령 등
일부개정지침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중개업법자치법규
폐지규칙(안)입법예고1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법예고15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훈 령

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훈령 제260호

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제1조(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행정관리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5조제1항 및 제3항·제9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서구출장통제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출장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 기획팀”을 “기획홍보실 기획혁신팀”으로 한다.

별지규격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서구상황실관리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상황실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및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서구통계사무처리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서구가로환경순찰반운영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가로환경순찰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을 “기획홍보실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서구행정자료실운영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행정자료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조제1항·제7조제2항·제8조·제9조 및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서구일상감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일상감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조제1항·제7조제2항·제7조제3항 및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서구용역업무관리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용역업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7조제1항·제7조제2항·제7조제3항·제8조제1항·제8조제2항·제10조제1항·제10조제2항·제10조제3항·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감사

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서구홈페이지운영에관한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홈페이지 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5조 및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한다.

별표 1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건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녹지경관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민원과장”으로, “건설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되, 세부메뉴 무인민원발급기이용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부메뉴 동영상방송국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부메뉴 사회복지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세부메뉴 보도자료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세부메뉴 교육소식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기획감사실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세부메뉴 새마을문고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주민자치과장”을 “교육지원과”로, 세부메뉴 맛있는집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환경위생과장” “위생과장”으로, 세부메뉴 민방위안내의 자료관리책임자란 중 “민원봉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서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공보과”를 각각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제6조·제7조제1항 및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별표의 사무처리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건설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별표 2의 근무기간란 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서구행정동향보고업무처리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행정동향보고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조제2항·제3조제3항·제4조제3항 및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서구동행정지도감독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동행정지도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조제2항·제5조제4항·제5조제5항·제6조제2항·제6조제3항·제6조제5항·제7조제1항·제7조제2항·제7조제3항·제8조제1항·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조제3항·제5조제4항·제6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서구청원경찰복무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청원경찰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1조·제12조제3항·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중 “건설과”를 “녹지경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 중 “도시담당” 을 “도시행정담당” 으로, “도시정비과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도시국장” 을 “도시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서구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인사행정담당” 을 “인사담당” 으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자란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서별란 중 “주민자치” 를 “총무” 로, “지적” 을 “토지정보” 로, “교통행정” 을 “교통민원” 으로, “건축허가” 를 “건축” 으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서구지하수사용계측기봉인기취급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지하수사용계측기봉인기취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치수담당” 을 “치수관리담당” 으로 한다.

제19조(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 를 각각 “재난관리과” 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도시건설교통국장” 을 각각 “도시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8조제3항 및 제10조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을 각각 “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별표 1의 근무장소란과 준수사항란 중 “재난안전관리과” 를 “재난관리과” 로 하고, 준수사항란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을 “재난관리과장” 으로, “도시건설교통국장” 을 “도시관리국장” 으로 한다.

제20조(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을 “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21조(인천광역시 서구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도시건설교통국장” 을 각각 “도시관리국장” 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 을 “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국장” 을 “도시관리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규
---	---

인천광역시서구감사사무처리요령 등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08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서구예규 제75호

인천광역시서구감사사무처리요령 등 일부개정지침

제1조(인천광역시서구감사사무처리요령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감사사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가목 및 나목·제2호·제4호가목 및 나목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호나목 중 “감사팀”을 “감사법무팀”으로 한다.

제4호나목 중 “인사행정팀”을 “인사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통제자란 중 “감사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서구고시및공고에관한지침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고시및공고에관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 중 “기획감사실(법무통계팀)”을 “기획홍보실(감사법무팀)”으로 하고, “문화공보과(공보팀)”을 “기획홍보실(구정홍보팀)”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서구행정홍보자료관리지침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행정홍보자료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의 각 목 중 “문화공보과장” 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하고, 홍보자료제작시행체계 중 “문화공보과” 를 “기획홍보실” 로 한다.

제3호의 각 목 중 “문화공보과” 를 “기획홍보실” 로 한다.

별표 중 “문화공보과장” 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검정지침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검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의 구분청란 중 “인사행정담당” 을 “인사담당” 으로 하고 “사회지도담당” 을 “자치지원담당” 으로 하며, 같은 호 사업소란과 별표 중 “계” 를 “팀” 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서구민방위시설관리지침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민방위시설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민원봉사과장” 을 각각 “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서구민방위교육훈련용장비관리지침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민방위교육훈련용장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민원봉사과장” 을 “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서구민방위장비관리지침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민방위장비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민원봉사과장” 을 각각 “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표 참고사항란 중 “민원봉사과장” 을 “재난관리과장” 으로 한다.

제8조(인천광역시서구성희통예방지침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성희통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조제3항·제10조·제12조 및 제14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복지환경경제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주민자치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여성복지담당”을 “여성아동담당”으로 한다.

제9조(인천광역시서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골재사용촉진및과다적치방지 지침의 개정) 인천광역시서구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골재사용촉진및과다적치방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제6호의 부서명란과 추진사항란 및 제7호의 재활용골재 사용촉진란추진흐름도와 재활용골재 과다적치 방지란 추진흐름도 중 “건축허가과”를 각각 “건축과”로 하고, “환경위생과”를 각각 “환경보건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중개업법자치법규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폐지규칙(안) 및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폐지규칙(안)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중개업법자치법규
폐지규칙안 입법예고****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과 인천광역시서구 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령으로 흡수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폐지
-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규칙 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7. 24 (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토지정보과장, 우편번호 404-701,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번지) Fax 032-560-4819】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기타 참고사항
- 규칙(안)에 대한 내용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 032-560-4815로 문의 바랍니다.

자 치 법 규 폐 지 안 요 약 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폐지규칙(안)
폐 지 이 유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면 개정되어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및 같은 법 시행령 (2005. 12. 30.)에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 함에 따라 동 규칙을 폐 지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 폐지
폐 지 안	“ 별 지 참 조 ”
산·구조문대비표	“ 해 당 없 음 ”
관계법령 발췌	“ 해 당 없 음 ”
관련사업 계획	“ 해 당 없 음 ”
예산 수반사항	“ 해 당 없 음 ”
기타 참고사항	“ 해 당 없 음 ”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 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008년 6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조의 3)
-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2조의 3 제2항)
- 서면조사시 법인이 제출하는 서식을 종전 5종에서 3종으로 축소함(안 별지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위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3) 보내실 곳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서구청 세무과
(전화 : 032-560-4212, 팩스 : 032-560-419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 법 규 정 비 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영세·성실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부담을 환화를 통한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및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 3) ○ 별지 5호 서식(서면신고서) 중 제1호 및 제2호 삭제
개 정 안	“별 지 참 조”
신·구조문대비표	“별 지 참 조”
관계 법령 발체	“별 지 참 조”
관련 사업 계획	“해 당 없 음”
예 산 수 반 사 항	“해 당 없 음”
기타 참고 사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표준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 신·구조문 대비표 생략》

제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1호 및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처벌절차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 규정에 의거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
[별지 제5호서식]	
서식 목차	서식 목차
1. <u>법인현황</u> 2. <u>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u> 3. ~ 5. (생략)	〈삭제〉 〈삭제〉 1. ~ 3. (현행 3. ~ 5.와 같음)

개 정 안

<삭 제>

현 행

1. 법인 현황

법인명	①법인 등록 번호	법인 설립 년월일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 년월일	본점 소재지	전화 번호	대표자	업 종	자본금 (억원)	②법인 구분	③종류
본 점										국내 외국 외투	상장, 비상장, 중소기업, 일반, 공공, 비영리

※ 본점만 있는 경우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번호	⑤최초 설치일	⑥사업자 등록 연월일	⑦사업자 등록번호	⑧지점 등기일	⑨사 유 형 태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근무 인원
							자 가 입 차	m ²	m ²	m ²
							자 가 입 차	m ²	m ²	m ²
							자 가 입 차	m ²	m ²	m ²
							자 가 입 차	m ²	m ²	m ²

(297mm×210mm)

※ 서식 1. 법인현황 작성요령

- ① 법인등록번호 : 법인별 고유등록번호
 ② 법인구분 : 해당사항에 ○표
 ③ 종업원명 : 해당사항에 ○표
 ④ 사업장설치일 : 해당사업장의 최초설치 연월일 기재
 ⑤ 최초설치일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일
 ⑥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점명 : 지점등기를 한 경우 등기일
 ⑨ 사업장 : 소유형태(자가, 임차) 해당란 ○표
 토지면적 : 건물면적 :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부분기재(전용, 공용)
 인 원 : 해당 사업장의 실근로 인원(파견인원 포함)
 ※ 작성시 참고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illegible]